

※ 본 문서의 [별표 1] 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현황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, 확정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
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내규

2020.03.01. 제정
 2020.09.01. 전부개정
 2020.09.01. 일부개정
 2020.10.01. 일부개정
 2020.12.01. 일부개정
 2021.01.01. 일부개정
 2022.09.01. 일부개정
 2023.03.01. 일부개정
 2023.09.01. 일부개정
 2024.03.01. 일부개정
 2024.05.01. 일부개정
 2024.09.01. 일부개정
 2025.01.01. 일부개정
 2025.09.01. 일부개정
2026.03.01. 일부개정
 <대학원 행정팀>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 3조제5호에 따른 융·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융합전공의 종류) ① 융합전공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변경형 융합전공: 하나의 전공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공변경을 하여 이수하는 형태
2. 추가이수형 융합전공: 원전공 외에 추가로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형태

제3조(개설요건) ① 융합전공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미래사회 수요분야 대비를 위한 융·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함
2.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야 함
3. 융합전공관련 분야의 충분한 연구 및 교육 능력을 가진 교원 4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, 참여학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
4.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 교육여건이 확보되어야 함
5.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 최소 1과목과 참여학과별로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여야 함

<개정 2026. 3. 1.>

② 융합전공 운영에 참여할 교원들로 융합전공협의회를 구성하고,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주관학과와 주관대학(원)을 정한다.

제4조(참여교원) ① 융합전공의 교육·연구는 참여학과의 소속 교원들로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융합전공 참여교원(이하 “참여교원”이라 함)이라 함은 전공 개설에 참여한 전임교원을 말하며, 그 밖의 전임교원이 신규로 융합전공에 참여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참여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관대학(원)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<삭제 2026. 3. 1.>

[제5조에서 이동 2026. 3. 1.]

제5조(융합전공협의회) ① 융합전공협의회는 전공운영에 참여하는 학과의 전임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참여교원 전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면 주관대학(원)의 장이 그 임기를 2년 이내로 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6. 3. 1.>

② 융합전공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융합전공 개설 신청 및 융합전공의 종류
2. 융합전공협의회 위원장 추천 <개정 2026. 3. 1.>
3. 주관대학(원) 및 주관학과 선정
4. 교육과정 편성
5. 교육과정 운영
6. 융합전공 신청자격
7. 융합전공 신청자 선발
8. 졸업자 선발 및 졸업사정
9. 그 밖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③ <삭제 2026. 3. 1.>

④ 융합전공협의회에 관해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129조(학과관리위원회)를 준용한다.

[제6조에서 이동 2026. 3. 1.]

제6조(개설신청 및 승인) ① 융합전공의 개설은 융합전공협의회를 거쳐 대학원이 정하는 기간에 주관대학(원)의 장이 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신청서[별지서식 1], 참여교원 명단[별지서식 2] 및 교과과정 편성표[별지서식 3]을 작성하여 신청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 9. 1.>

② 융합전공의 종류, 주관대학(원) 및 주관학과,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(이하 “참여학과”라 함) 등의 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현황은 [별표 1]과 같다.

③ 융합전공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대학원 융합전공 변경 신청서[별지서식 4]를 작성하고, 제1항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1. 융합전공명(영문명 포함)
2. 융합전공의 종류
3. 교육목표
4. 주관대학(원) 및 주관학과
5. 참여학과

<신설 2026. 3. 1.>

[제4조에서 이동 2026. 3. 1.]

제7조(운영) ① 융합전공의 학사관리 주관대학(원)은 참여학과의 협조를 받아 융합전공을 운영

한다.

- ② 융합전공 학생의 지도교수는 참여교원으로 한다. 다만, 미참여 교원이 지도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교원과 공동으로 지도교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융합전공 학생의 지도교수 위촉자격은 참여교원의 소속학과 기준에 따른다.
- ④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과과정 편성) ① 편성교과목은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, 각각의 참여학과(전공)별 최소 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학과(전공)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 이 경우, 참여학과 각각의 교과목은 참여학과 별로 최소 1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②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3. 1.>

제9조(폐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합전공은 폐지의 대상이 되며,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해당 융합전공과정을 심의한 후 폐지한다.

1. 융합전공 참여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요청하는 경우
 2. 기존 대학원의 학과에서 융합전공의 교과내용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 (다만, 수용가능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융합전공 참여교원을 포함한 교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.)
 3. 3학기 연속 신청 학생이 3명 미만인 경우
 4. 전공 운영 중 연속 3년간 신청학생의 누적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
 5. 제3조제1항의 개설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<개정 2026. 3. 1.>
 6. 그 밖의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합전공협의회의 융합전공 운영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. 다만, 폐지유보의 결정은 1회로 한다.
- ③ 폐지된 융합전공은 이수신청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10조(신청자격) 융합전공을 진입하려는 학생은 참여학과 소속이어야 한다.

제11조(학생관리)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통계, 장학 등 학사관리는 주관학과에서 관리한다.

- ② 융합전공 이수자의 수강 및 졸업사정 관리는 주관대학(원)에서 주관하고,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 학과에 통보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

제 2 장 전공변경형 융합전공

제13조(학생학적)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으로 전공변경하여야 하며, 전공 변경은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33조(전공변경)를 준용한다.

제14조(학점의 이수 및 인정) ① 융합전공 학생은 각 융합전공의 내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그 최소학점은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32조를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에는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 중 최소 1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26. 3. 1.>

③ 전공변경 전 취득한 교과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의 내규를 따른다. <제2항에서 이동 2026. 3. 1.>

제15조(학위수여) 융합전공 학생이 융합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6조(학위기와 증명서)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는 본교 「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 제21조(학위기와 증서)에서 정하는 학위기를 수여한다. <개정 2022. 9. 1.>

②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증명서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.

제 3 장 추가이수형 융합전공

제17조(학생학적)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적은 원소속 학적을 유지한다.

제18조(학점의 이수 및 인정) ① 융합전공 학생은 각 융합전공의 내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그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, 박사과정 15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에는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 중 최소 1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26. 3. 1.>

③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원전공 교과목과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. <제2항에서 이동 2026. 3. 1.>

제19조(이수포기) 융합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그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20조(학위수여) 융합전공 학생이 원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학위를 수여한다.

제21조(학위기와 증명서)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는 본교 「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 제21조(학위기와 증서)에서 정하는 학위기를 수여한다. <개정 2022. 9. 1.>

② 융합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.

1. 재학증명서: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
2. 성적증명서: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
3. 졸업증명서: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조, 제6조, 제13조 내지 17조,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 승인된 융합전공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1 개정)

[별표1] 정밀보건과학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영어영문학과, 바이오융합공학과,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협동과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1 개정)

[별표1] E-ICT-문화·스포츠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고고미술사학과),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)

2. (경과조치) 별표1의 개정사항(참여학과 추가)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[별표 1] 개정)

[별표 1] E-ICT-문화·스포츠융합전공: 참여학과 삭제(고고미술사학과) 및 전공변경형 추가
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: 전공변경형 추가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
[별표 1]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의생명융합과학과) 및 주관학과 변경(보건과학과에서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로 변경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, 제16조, 제21조, 별표 1 개정, 별지서식 1~3 변경)

[별표 1]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, 디지털인문과학융합전공, 양자정보과학융합전공 신설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
[별표 1] 양자정보과학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정보보안학과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
[별표 1] 정밀보건과학융합전공: 참여학과 추가(뇌공학과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
[별표 1] 정밀보건과학융합전공 참여학과 삭제(글로벌헬스협동과정 2022.03.01. 폐지), 헬스케어 ICT융합전공 신설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[별표 1] 수리정보교육융합전공, 첨단반도체융합전공 신설
- 2. (경과조치) [별표 1]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[별표 1] 첨단반도체융합전공 모집중단, 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 신설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[별표 1] 인공지능스마트융합기술융합전공 참여학과 변경(사이버보안학과 제외), E-ICT-문화·스포츠융합전공 참여학과 변경(신소재화학과, 사회체육학과 및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제외, 스포츠융합학과,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및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 추가) 혁신신약융합전공 신설, 모빌리티보안융합전공 신설, 바이오메디컬-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신설, 스마트에너지융합전공 신설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 개정)
[별표 1] 러닝헬스시스템융합전공 참여학과(의학통계학협동과정) 2025.08.31. 제외, 디지털인문과학융합전공 2025.08.31. 폐지, 합성생물학융합전공 2025.09.01. 신설, 무기발광디스플레이전공 트랙융합전공 2026.03.01. 신설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3조 내지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4조, 제18조, 별표 1, 별지서식 2 개정, 별지서식 4, 별지서식 5 신설)
[별표 1] 수리정보교육융합전공 2026.02.28. 폐지유보, 첨단반도체융합전공 2026.02.28. 폐지, 표적분해신약융합전공 참여학과(분자생명과학과) 2026.03.01. 생명과학과로 명칭변경, 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 2026.03.01. 참여학과 추가, 화학물질안전관리융합전공 2026.03.01. 신설
- 2. (자체 교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융합전공에 진입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
[별표 1]

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현황

전공명	추가 이수형	전공 변경형	주관대학(원)	주관학과	참여학과	신설일자
인공지능스마트 융합기술융합전공	○		과학기술대학	전자·정보공학과	전자·정보공학과, 생명정보공학과, 환경공학과, 환경정책기술협동과정	2020.3.1
E-ICT-문화·스포츠 융합전공	○	○	과학기술대학	응용물리학과	문화콘텐츠학과, 응용물리학과, 스포츠융합학과, 지능반도체공학과,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	2020.3.1
정밀보건과학 융합전공	○		보건과학대학	바이오의공학과	바이오의공학과, 의생명융합학과, 보건안전융합학과, 보건학과, 글로벌헬스협동과정<2022.03.01.폐지>, 인공지능학과, 영어영문학과, 바이오융합공학과,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협동과정, 뇌공학과	2020.9.1
러닝헬스시스템 융합전공	○	○	보건과학대학	헬스케어사이언 스학과	보건학과, 보건안전융합학과, 보건학협동과정, 간호학과, 의학통계학협동과정<2025.08.31.제외>, 의학과,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, 의생명융합학과	2020.9.1
지속가능생활시스템 융합전공	○		사범대학	생활과학과	생활과학과, 디자인조형학과,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	2020.9.1
지능형모빌리티 융합전공	○		공과대학	전기전자공학과	전기전자공학과, 기계공학과, 컴퓨터학과	2022.9.1
디지털인문과학 융합전공 <2025.08.31.폐지>	○		문과대학	영어영문학과	영어영문학과, 독어독문학과, 언어학과	2022.9.1
양자정보과학 융합전공	○	○	이과대학	물리학과	물리학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정보보안학과	2022.9.1
헬스케어ICT 융합전공	○		과학기술대학	생명정보공학과	전자정보공학과, 생명정보공학과, 식품생명공학과, 약학과	2024.3.1
수리정보교육 융합전공 <2026.02.28.폐지유보>	○	○	사범대학	교과교육학과	교과교육학과, 컴퓨터학과	2024.4.1
첨단반도체 융합전공 <2026.02.28.폐지>	○		공과대학	전기전자공학과	전기전자공학과, 화공생명공학과, 신소재공학과, 국제대학원, KU-KIST융합대학원	2024.4.1
표적분해혁신신약 융합전공	○	○	생명과학대학	생명과학과	생명과학과<2026.03.01.명칭변경>, 융합생명공학과, 화학과<2026.03.01.추가>, 의과학과<2026.03.01.추가>, 의생명융합학과<2026.03.01.추가>	2024.9.1
혁신신약융합전공	○	○	약학대학	약학과	약학과, 가속기과학과	2025.3.1
모빌리티보안융합전공	○		과학기술대학	사이버보안학과	사이버보안학과, 미래모빌리티학과	2025.3.1
바이오메디컬-데이 터사이언스융합전공	○	○	공공정책대학	빅데이터사이언 스학과	생명정보공학과,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, 응용수학과, 약학과	2025.3.1
스마트에너지융합전공	○		과학기술대학	신소재화학과	신소재화학과, 전자및정보공학과	2025.3.1
합성생물학 융합전공	○	○	생명과학대학	융합생명공학과	융합생명공학과, 화공생명공학과, 환경생태공학과, 식물생명공학과	2025.9.1
무기발광디스플레이 전공트랙융합전공	○		공과대학	전기전자공학과	전기전자공학과, 마이크로/나노시스템협동과정	2026.3.1
화학물질안전관리 융합전공	○		생명과학대학	환경생태공학과	환경생태공학과, 건축사회환경공학과, 보건안전융합학과	2026.3.1

[별지서식 2] 참여교원 명단 <개정 2026. 3. 1.>

대학원 융합전공 참여교원 명단

융합전공명: ○○융합전공

구분	소속	성명	확인 서명
<u>융합전공협의회</u> 위원장			
<u>융합전공협의회</u> 위원			

※ 겸임 소속인 경우, 원소속을 기재

[별지서식 5] 참여학과 동의서 <신설 2026. 3. 1.>

대학원 융합전공 참여학과 동의서**■ 참여대상 융합전공 기본정보**

구분	내용
융합전공명 (영문명)	OO융합전공 (Interdisciplinary Major Program in OO)
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이수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변경형
교육목표	융합전공의 교육목표를 서술
주관대학(원) / 주관학과	주관대학(원) 및 주관학과 기재 ※ 주관학과 소속 대학이 주관대학이 됨
참여학과	참여대상 학과 전체 기재

상기 대학원 _____ 융합전공의 교육목표 등을 검토한 결과, 본 학과는 해당 융합전공 참여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학원 _____ 학과(참여학과) 주임교수: _____ (인)

※ 안내사항

- 본 내규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설요건(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)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입니다. (각 참여학과의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함)
- 융합전공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, 모든 참여학과로부터 본 양식의 동의서를 받아 [별지서식 1]의 개설 신청서와 함께 대학원혁신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융합전공 참여학과를 추가하려는 경우, 해당 학과로부터 본 양식의 동의서를 받아 [별지서식 4]의 변경 신청서와 함께 대학원혁신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